

7. 기타 권리확인

㉠ 시장관리권부존재확인 청구

피고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시장의 관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목 록

상 호 : ○○역전 종합상가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 ○○구 ○○동 173
시장개설자 : ○○종합상가 주식회사
시장개설허가일자 : 2010. 9. 27.
대지면적 : 4,518.41㎡
건물면적 : 14,890,882㎡
매장면적 : 7,801,092㎡
점포수 : 341개. 끝.

[참조판례]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의 해석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이 '시장개설자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분양한 경우에'라고 규정하여 시장개설자가 매장을 분양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의 적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한편 분양이라는 것은 매장을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장개설자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개설자가 아닌 시장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이 분양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시장개설자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분양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이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든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이 분양된 경우 분양 결과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직영하게 된 자가 생기면 그가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입점 상인의 3분의 2 이상으로서 그들이 운영하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들이 조직한 조합이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해석해야 한다.(서울북부 1997.2.19. 선고 96가합13471 판결)

㉡ 어업행사권확인 청구

○○시 ○○동 ○○지선수면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100,000㎡(전남○○양식어업면허 제110,109호),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100,000㎡(전남○○양식어업면허 제110,110호),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100,000㎡(전남○○양식어업면허 제110,111호)에 대한 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토지사용수익권확인 청구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사건 각 임야라 함)의 점유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한국○○개발공사는 피고 심○옥, 심○빈, 심○삼에게 별지 목록 제1, 3기재 각 임야(이하 이사건 제1, 3 각 임야라 함)를, 피고 심○옥, 심○빈, 심○삼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각 인도하라.
3. 원고에게 피고 백○훈, 임○선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4. 8. 접수 제1890호로서 마쳐진, 별지 목록 제2기재 임야(이하 이사건 제2임야라 함)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2015. 11. 1. 5. 접수 제23775호로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수는 이 사건 제1, 2 각 임야 중 각 5,851분의 3,405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2011. 5. 18. 접수 제9845호로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국○○개발공사는 이 사건 제1임야 중 소외 백○기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2015. 8. 14. 접수 제18908호로서 마쳐진 위 지분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위 같은 등기소 같은 해 11. 15. 제23777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위 같은 임야 중 피고 김○수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같은 해 8. 23. 접수 제19312호로서 마쳐진 위 지분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위 같은 등기소 같은 해 11.15. 접수 제23778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사건 제3임야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같은 해 8. 14. 접수 제18908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위 같은 등기소 같은 해 11. 15. 접수 제23777호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온천권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도 ○○군 ○○읍 ○○리 12, 같은 리 13 대지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④부분에서 각 용출하는 온천사용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온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가 위 온천을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